

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총무위원회(2004. 12. 7)

1. 심사 경과

가. 2004. 11. 29 : 사천시장제출

나. 2004. 12. 2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65호)

다. 2004. 12. 7 :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
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(환경보호과장 신태영)

가. 제정 이유

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·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이 제정·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1)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자·관리자 책무 규정

○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, 편의용품의 비치,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

2) 상위법령에서 정한 이외의 설치기준 규정

○ 배수·방수에 관한 사항 및 청소도구함 등의 설치

3) 위탁관리 및 유지관리 비용 지원근거 마련

4)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개방기준 규정

○ 옥외 : 항상 개방

○ 옥내 :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한 시간

5) 이동식화장실의 설치기준 규정

○ 남·여자용 구분 따로 설치, 환풍시설 설치, 안내표지판 부착

6) 유료화장실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과 준수사항 규정

다. 관계 법령

-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-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·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. 1. 29 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4. 7. 29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.
- 조례의 체계와 구성 그리고 자구의 사용은 적정하게 되어 있으며 본 조례는 상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2004. 10. 22 ~ 11. 13 까지 입법예고 한바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음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위원	질의요지	답변자	답변요지
이삼수 위원	○ 위탁관리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원근거는?	환경보호 과장 신태영	○ 본 조례 제6조제2항에보면 유지·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
성재운 위원	○ 사천읍터미널 화장실관리를 철저히 하기바람	환경보호 과장 신태영	○ 도로교통과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음
이인효 위원	○ 용현 용치저수지의 자연 발생유원지에 간이화장실 설치 요망	환경보호 과장 신태영	○ 현지확인하여 검토해 보겠음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: 없음